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정관

제 정	2010. 01. 19.
개 정	2011. 01. 27.
개 정	2014. 01. 23.
개 정	2014. 07. 18.
개 정	2016. 11. 15.
개 정	2019. 04. 13.
전면개정	2020. 09. 25.
개 정	2024. 10. 18.

제1장 총 칙

제 1 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연맹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중앙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부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서울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규약 제5조에 의하여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서,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SEOUL Shooting Federation for the Disabled(약칭 “SSFD”)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설치목적 및 지위)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구(區)의 장애인사격 종목 경기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 인을 양성하여 서울시 장애인사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의 서울시의 지부이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서울시 내의 사격 종목을 통할하는 유일한 경기단체이다.

제 4 조(사업)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시 장애인사격 종목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2. 구(區)장애인사격연맹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사격 교실운영·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장애인사격 종목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 시·도 및 해외와의 장애인사격 종목 교류
6. 시(市) 장애인사격대회 개최 및 중앙연맹이 주최·주관·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주최·주관·후원·지원 등
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소관 시 선수단 훈련 및 참가
8. 장애인사격 종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사격 종목의 육성
9.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사격종목 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 체육 수업 보급
10. 장애인사격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1. 장애인사격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2. 장애인사격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3. 지역의 장애인사격 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구(區)장애인사격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규모의 사업은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구(區) 지부로 구성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중앙연맹 정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중앙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4.10.18.>

1. 권리사항

- 가. 중앙연맹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나. 중앙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다. 중앙연맹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무사항

- 가. 중앙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은 중앙연맹의 등록규정에 의거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중앙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중앙연맹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한다.

④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위반, 단체운영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인한 중앙연맹 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요구 시 이를 따른다.

제7조(구(區)지부 승인 및 취소)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구(區)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구(區) 체육단체가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지부 승인을 요청할 시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② 구(區) 지부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지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7인 이내
3. 1인 이상의 감사 <개정 '24.10.18.>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4.10.18.>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⑤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 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달리 적용하며, 정관 제10조 제1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당선자가 된다. <개정 '24.10.18.>

1. 가맹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기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2. 해당년도 정기총회 개최 기일까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가맹단체 회장 당선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 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일 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4.10.18.>
-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연임기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4.10.18.>
- ⑧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4.10.18.>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區) 지부의 장
 2. 선수위원장
- ② 제1항 2호의 선수위원장은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종목에 등록된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
- ③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⑤ 제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의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4.10.18.>

⑥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5항에 따르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4.10.18.>

⑦ 회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총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4.10.18.>

⑧ 이 규정에 정한 것 외 또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중앙연맹의 법제상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24.10.18.>

⑨ 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업무 포함)를 수행하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24.10.18.>

⑩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4.10.18.>

제11조(임원선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정한다. 단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또는 동일 직장 재직자가 각각 재적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4.10.18.>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대의원 또는 회계전문가로 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일 구(區) 지부의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⑥ 임원은 반드시 중앙연맹의 임원 승인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중앙연맹은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에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중앙연맹에 보고하고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4.10.18.>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4.10.18.>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10.18.>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10.1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4.10.18.>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4.10.18.>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4.10.18.>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

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연맹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⑧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장애인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전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제6항의 결과로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6조(임원에 대한 징계)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區) 지부의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성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개정 '24.10.18.>

4. 해당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관련 규정이 없을 시 중앙연맹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7조(대의원)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區) 지부의 장
2.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 선수위원장(소속선수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

② 제1항 각호 외에도 중앙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 구성에 일부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원은 제1항 각호 총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區) 지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3일 전에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동일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또는 제3항에 의한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區) 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4.10.18.>
6. 기타 중요사항 <신설 '24.10.18.>

제1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4.10.18.>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울시장에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4.10.18.>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특례) ① 구(區) 지부의 수가 적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시장에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제18조에 의한 총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시에는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 반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전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시장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2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특례) ①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대의원은 동 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은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30조(각종 위원회) ① 필요시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구(區) 지부

제31조(구(區) 지부의 지위 및 명칭) ① 구(區)에는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정관 제7조에 의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② 구(區) 지부는 구(區)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구(區)에 둔다.

제32조(구(區) 지부의 임원) ① 구(區) 지부의 회장 선출, 임원의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 정관을 준용하여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해당 구(區)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한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등에 의한 승인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한 사항도 그러하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구(區)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구분)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정부, 공공단체, 중앙연맹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6. 사업 수익금(후원금 등)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중앙연맹과 동일하게 한다.

제9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 ① 서울시장장애인사격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중앙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각급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직제 및 경영공시)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정관 및 제 규정 제·개정 승인) ①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관은 중앙연맹의 문서 협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관 변경 또는 수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 이외에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제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중앙연맹 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주요규정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41조(정관의 해석) ① 정관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중앙연맹의 문서 협의 후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 및 중앙연맹의 시·도지부운영규정은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관보다 우선하며, 서울시장애인사격연맹의 정관이 이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 및 중앙연맹의 시·도지부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제한사항) 이 정관 및 상위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거나 지부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부 칙('11.01.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임원) ① 본 연맹 창립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 한다.

부 칙('14.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07.1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 총회까지로 한다.
2. 동 규정 제정 이전에 기 선임된 임원과 대의원들이 동 규정에 저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은 차기 이사회까지, 대의원은 차기 대의원총회까지 보설토록 한다.

부 칙('16.11.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6년 12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회장 및 임원을 본 정관을 적용하여 선출할 경우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대의원 총회까지로 한다.

- ② 대의원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대의원총회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사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 칙('19.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앙연맹과 문서 협의 후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임원의 연임기간 산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도지부 임원의 임기 제한) 이 정관 개정 이후 연맹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 취임 시, 임원 승인기관인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연맹은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승인하되, 임원의 임기 기산은 2025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부 칙('24.10.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앙연맹의 문서 협의 후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